

기성회규약

제정	1995. 3.
개정	1996. 6.
개정	1998. 5.

제1조 (목적) 본 기성회는 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, 교직원 후생복지 및 처우 개선, 학교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) 본회는 우송대학교기성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 (사무소) 본회의 사무소는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대학”이라 한다) 내에 둔다.

제4조 (사업) ①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학교 교직원의 연구비 및 수당 지급
2. 학생복지시설 사업
3. 학교 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
4.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
5. 건축 및 시설기금의 부담

②본회의 사업계획은 총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5조 (회원)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.

1. 일반회원은 본 대학에 재적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한다.
2.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사업을 찬동하고 자진하여 본회에 상당한 금품을 희사한 자로 한다.

제6조 (임원과 그 직무) ①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명예직으로 한다.

1. 회장 1인
2. 부회장 1인
3. 이사 5인 이내
4. 감사 1명

②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③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④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
⑤본회의 임원은 학생의 직계존속인 보호자가 아니면 될 수 없다. 다만, 당연직 이사와 특별회원은 예외로 한다.

제7조 (임원의 선출과 임기) ①본회의 임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
②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 임원이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③총장은 본 대학을 대표하며, 그 재임기간 중 당연직 이사로 한다.

제8조 (회의) ①회의는 다음에 의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1.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.
2.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
②본회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총회의 경

우 출석인원이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될 때에는 출석 인원만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9조 제1항의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. ③정기회는 각각 당해의 회에서 정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총회 또는 이사회에 있어서는 정기회를 생략할 수 있다.

④회의의 의결에 있어서는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9조 (총회의 기능) ①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규약 제정의 개, 폐
2. 임원의 선출
3. 사업과 예산 및 결산의 보고 수리

제10조 (이사회 의 기능)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과 결정
2.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의 심의 확정과 결산의 승인
3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11조 (회무와 회계처리) ①본 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총장의 동의를 얻어 학교의 사무직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
②본 회의 회계사무는 당해 학교 설립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법규 또는 사학기관 재무규정을 준용한다.

③본 회의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재정) ①본 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원의 회비와 특별회원의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서 충당한다.

②일반회원의 회비는 총장이 정하고 감독청에 보고한다.

③회비 감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
제13조 (회계년도) 본 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에 따른다. 다만,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할 수 있다.

제14조 (예산회계 사무의 위임) 본 회의 예산회계 사무 중 다음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.

1.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편성
2. 성립된 예산의 집행. 다만, 예산의 과목별 전용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이사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위임한다.

제15조 (재산의 귀속) 본 회의 사업으로 조성된 일체의 재산은 그 때마다 학교 설립자에게 기부한다.

제16조 (해산) ①본 회의는 목적사업의 완수로 인하여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 또는 학교의 감독청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해산된다.

②본 회의 해산에 있어서는 해산일 현재로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해산일로 부터 2주일이내에 학교와 감독청에 제출한다.

1. 수입지출 현재표 (은행잔고증명서 첨부)
2. 재산목록
3. 재산처분 방법
4. 청산인의 명부 및 의결서

제17조 (청산인) 본 회가 해산할 때에는 이사회가 청산인이 된다. 다만, 학교의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청산인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18조 (청산인의 권리 의무 제한) 청산인은 총장의 지시를 받아 청산 업무를 수행하되 청산의 목적 범

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.

제20조 (감독) 본 회의 사업과 수입지출 예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